

#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(요약)

## [소득·세액 공제요건]

구분	공제요건			
	나이요건	소득요건 (100만원 이하)	동거 요건	
기본공제 (p.110)	본인	×	×	×
	배우자	×	○	×
	직계존속	60세 이상 ( <span style="color:red">60</span> .12.31. 이전)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 ( <span style="color:red">20</span> .1.1. 이후)	○	×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
	위탁아동	18세 미만	○	
	장애인	×	○	
추가공제 (p.112)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( <span style="color:red">50</span> .12.31. 이전 生)		
	부녀자(50만)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		
	한부모(100만)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*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		
	연금보험료 공제(p.117)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
특별세액 공제 (p.177)	신용카드 등(p.145)	×	○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
	보장성보험료	○	○	
	의료비	×	×	
	교육비	×	○	
표준세액공제	기부금	×	○	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
	표준세액공제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

\*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\*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

\* 정차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

\* 항시치료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[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]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의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· 날인하여야 함,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

##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] p.145

구 분	내 용
공제 대상자	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연령제한 없음) ※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공제율	① 신용카드(15%) ②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* 사용분 (30%) 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(40%)
공제금액 계산	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* = 신용카드+전통시장사용분+대중교통이용분 +현금영수증+직불카드+선불카드+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* 중고차 구입액의 10% 포함 ② 공제액 = [①의 사용액 × 15%(30%·40%)] - 총급여액의 25%
한도액	MIN(총급여액 × 20%, <span style="color:red">330</span> 만원*) ※ '20년 귀속에 한해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* 총급여액 7천만원 ~ 1.2억원이하( <span style="color:red">280</span> 만원), 1.2억원 초과자( <span style="color:red">230</span> 만원) · 한도추가: 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(100만원)
공제제외	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·중·고·대학·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*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·전기·수도·전화·가스료, TV시청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(대여료 포함) ⑥ 자동차 등 취득세·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(중고차는 가능)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

## [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]

구 分	특별세액공제 항목	신용카드공제
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	취학전 아동 결제한 학원비 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	교복구입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가능
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공제 불가

## 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(특별소득공제)	세액공제
	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② (p.137)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조④ (p.122)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조⑤ (p.125)
공제 대상	·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·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	·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·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액공제	·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
기타	근로자인 세대주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가능	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, 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	
요건	· 청약자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 주택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·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(월 15만원 이하)	〈차입금 요건〉 1) 대출기관 차입 시 : 입주일, 전입일(갱신), 이주 포함)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하고 차입금이 일때 <sup>2</sup> 의 계좌로 직접 입금 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1%이상의 이자율로 대출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	· 총급여 7천만원 (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)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·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자와 주민등록증분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
대상 주택	('09.12.31. 이전 기입자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주택 1채 소유시에도 공제가능	· 국민주택규모 ·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· 국민주택규모주택 · 주거용 오피스텔 · 주거용 고사원 *부양가족명의 임차계약 체결 주택 공제가능
공제 한도	납입액의 40%	원리금 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
	연 300만원 한도		
	연 500만원 한도 (- 15년이상+고정금리 +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· 15년이상+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· 10년~15년미만+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)		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 90만원)
증명 서류	·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	· 주택지급증명서 · 주민등록표등본 · 거주자 차입시) )금전 소비내역계약서 및 계좌 이체영수증·무통장입금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	· 주민등록표등본 ·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월세액 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)
주의 사항	· 주택청약종합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의년 2월까지 제출)	· 임대차계약서는 공제 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으로 작성 및 상환 필요 · 법인·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· 무주택, 농기자재 포함 · 사업용·민무적주택 포함 ·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(승속 제외) · 등본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자금한 월세액만 공제

\* 2020.12.31.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

##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

■ 서비스 오픈 일정 2021.1.15. 이후 제공 예정

■ 제공되는 소득·세액 공제 항목

○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

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○ 공동인증서 이용 흠텍스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간소화

■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

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

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

■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

① 흠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(조회/발급→연말정산 간소화)

② 흠텍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(연말정산→연말정산 제공동의)

③ 세무서 방문 신청(제공동의 신청서 제출)

\*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·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